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28
------	-----

2023. 6.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11일,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2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6.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아이수루 의원)

### 1. 제안이유

-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중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규칙이 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기본시설<sup>1)</sup> 및 부대시설<sup>2)</sup>의 대관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에 따라 심의·승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사위원회 현황

- 세종문화회관 자체 규정에 명시된 대관심의위원회는 공연장 대관을 심의하는 공연 대관심사위원회와 미술관 대관을 심의하는 전시 대관심사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최근 3년간 공연 대관심사위원회는 총 799건의 대관을 승인하였고, 전시 대관심사위원회는 총 25건의 대관을 승인하였음.

---

1) 기본시설: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세종체임버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2관, 한글 갤러리 및 기타 부속시설

2) 부대시설: 데크플라자 옥외 공간과 기타 부속시설

**< 최근 3년간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연도	구분	개최일	회의안건	참석인원	회의결과
2021	공연	2021-01-26	2021년도 공연장 4차 수시대관	5	총 39건 승인
		2021-03-15	2021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채임버홀)	7	총 11건 승인
		2021-03-16	2021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대/M/S)	7	총 11건 승인
		2021-04-22	2021년도 공연장 6차 수시대관(대/M)	6	총 4건 승인
		2021-04-26	2021년도 공연장 6차 수시대관(채임버홀)	6	총 3건 승인
		2021-07-30	2022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대/M/S)	5	총 28건 승인
		2021-07-30	2022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채임버홀)	5	총 81건 승인
		2021-09-02	2022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	5	총 16건 승인
	2021-11-16	2022년도 공연장 3차 수시대관	5	총 7건 승인	
	전시	2021-06-22	2022 세종미술관 정기대관 심사	4	총 6건 승인
2021-07-06		2022 세종미술관 1차 수시대관 심사	2	총 1건 승인	
2021-08-12		2022 세종미술관 2차 수시대관 심사	2	총 2건 승인	
2022	공연	2022-01-18	2022년도 공연장 4차 수시대관	5	총 3건 승인
		2022-02-15	2022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대/M/S)	5	총 19건 승인
		2022-02-16	2022년도 공연장 5차 수시대관(채임버홀)	5	총 9건 승인
		2022-04-22	2022년도 공연장 6차 수시대관	6	총 8건 승인
		2022-04-25	2023년 정기대관(대/M/S)	6	총 27건 승인
		2022-05-04	2023~2025년 장기공연물 대관심사	5	총 12건 승인
		2022-05-13	2023년 상반기 채임버홀 정기대관	5	총 113건 승인
		2022-05-18	2023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	5	총 1건 승인
		2022-09-01	2023년 하반기 채임버홀 정기대관	5	총 107건 승인
		2022-10-13	2023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채임버홀)	5	총 33건 승인
	2022-10-17	2023년도 공연장 2차 수시대관(대/M/S)	5	총 12건 승인	
전시	2022-09-02	2023년 세종미술관 정기대관 및 2024년 장기대관심사	4	총 13건 승인	
2023	공연	2023-02-15	2023년도 공연장 3차 수시대관(채임버홀)	5	총 16건 승인
		2023-02-16	2023년도 공연장 3차 수시대관(대/M/S)	5	총 11건 승인
		2023-04-17	2024년도 정기 및 장기공연물 대관 심사	5	총 28건 승인
		2023-04-24	2024년도 정기대관(채임버홀)	5	총 200건 승인
	전시	2023-03-13	2023 세종미술관 1차 수시대관	3	총 2건 승인
		2023-04-19	2023 세종미술관 2차 수시대관	3	총 1건 승인

**다.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제6조의2)**

- 개정안은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의 대관 규정과 공연장 규정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재단의 규정과 내규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관심의회의) ① (생략) ② 대관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대관심의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이 -----.

현행	개정안
<p>③ 대관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u>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 <u>규정</u> <u>및 내규에</u> ----- -. ----- ----- ----- -----.</p>

- 현행 조례는 세종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대관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2013.10.4.)하였음.
- 당시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본부는 세종문화회관 대관에 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다만 서울시 20개 출자·출연기관 중 시장이 대관과 관련한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마련한 기관은 전무한 상황임.
- 문화본부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대관시설이 있는 서울문화재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대관 관련 조항은 없으며, 재단의 공연장 사용 규정과, 공연장 사용 내규를 자체적으로 규정해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은 조례 개정 이전부터 자체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을 결정해왔고 2013년 조례 개정 이후에도 이를 관성적으로 적용해왔음.
- 따라서 대관 심의를 실질적으로 10년간 규정과 내규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현행화하는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공연장대관내규」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는 있음.

## □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 ○공연 대관심의위원회

#### 1) 공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외부 심사위원 인력풀에서 회관이 위촉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은 평가점수제로 심사하며 평가점수는 방침으로 정하나, 체임버홀은 승인가부제로 심사할 수 있음
- 심사위원이 심사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수 있음

#### 2) 공연 대관심의위원회 운영현황

- 2023년 심의 위원회 인력풀 약 400명
- 2024년 정기대관 완료

### ○전시 대관심의위원회

#### 1) 전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 미술평론, 전시기획, 미술대학교수, 미술관 박물관 소속 학예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인력 풀 구성
- 대관 신청 접수 후 전시 장르별 해당 전문가로 심사위원 약 3배수 선별
- 대관 심사 계획 방침 후 참여 일정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함.
- 매년 인력풀 현행화

#### 2) 전시 대관심의위원회 운영현황

- 2023년 심의 위원회 인력풀 92명
- 2023년 전시 일정 중 공실에 대한 2차 수시대관 진행 완료
- 2023년 전시일정 확정, 2024년 정기대관 진행 준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2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11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김·경,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송경택,  
유정인, 유정희, 윤영희,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효원, 임종국, 정준호,  
한·신, 홍국표 의원(20명)

## 1. 제안이유

-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중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규칙이 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 현행과 같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내용

- 가.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중 “시장이 규칙으로”를 “사장이”로 한다.

제6조의2 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를 “규정 및 내규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대관심의회) ① (생략)</p> <p>② 대관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시장이</u>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대관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u>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의2(대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장이</u> ----- -----.</p> <p>③ ----- ----- ----- <u>규정 및 내규에</u> ----- -----. ----- ----- ----- -----.</p>